


정책제언

이제는 통합적 사회재난 관리를 논할 때

 **이동규** |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감염병,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광주 아파트 붕괴, 경북·강원 대형 산불 등 매년 대규모 신종 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재난 통계를 살펴봐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사회재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경사회 기반의 우리나라 재난대응 시스템은 자연재난 중심으로 발전했다. 반면 사회재난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미미했다. 산업화 이후 산업구조가 변경되고 고도화되며 사회재난 위험이 증가했지만 재난관리체계는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사회재난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

사회재난은 유형이 다양하고 담당 부처가 분산돼 있다. 예를 들면 건축물 붕괴는 국토교통부, 해양사고는 해양수산부,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소관 분야 재난을 관리한다. 그러나 재난은 발생 빈도가 낮아 항상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므로 재난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개별 부처의 독자적 대응은 어렵다.

또한 각 부처는 관련 분야의 진흥에 중점을 두며 재난 대비를 비효율적 투자라고 경시하는 경향도 만연하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보다 건설산업 진흥, 해수부는 해상안전보다 해양산업 진흥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분산형 재난관리체계는 빈틈을 수반하며 이를 메우기 위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 세계적으로 사회재난 총괄·조정 기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의 행안부 중심의 사회재난 통합 관리체계는 아직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4년 자연·사회재난 통합 관리를 목표로 소방방재청을 설치했다. 이후 크고 작은 재난을 겪으면서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국민안전처 등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행안부 체제로 외형적 형태를 갖췄다. 하지만 조직·기능 등의 측면에서 사회재난 총괄·조정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

재난관리를 특정 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재난관리의 성패는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항상 진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 1978년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왔다. 재난관리체계의 급격한 변화나 기능의 축소는 경계하면서 경험을 통해 안정된 부분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온 미국의 선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안부는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평상시 각 부처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분야별 재난관리 담당자를 교육·훈련해야 한다. 재난 발생 이후에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협력 기관이 개입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재난을 들여다보면 과연 행안부가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확보돼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각 부처를 아우르는 법·제도에도 공백이 많다. 주기적으로 겪는 뼈아픈 사회재난 경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필자는 재난안전 전문가로서 당선인의 재난안전 분야 공약을 관심 있게 살펴봤다. 특히 사회재난 위기관리 정책 개발과 실행을 강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사회재난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국정 방향을 확고히 정립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재난 총괄·조정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강화돼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는 재난 걱정 없는 안심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출처:머니투데이 _ 이동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정부동향

행정안전부

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 생활편의 높인다

- 행정안전부는 복잡·다양한 사회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 5건과 협업이음 과제 5건, 총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는 협업 상대방이 정해진 과제로 186개 기관에서 480개 과제를 제출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5건을 선정하였다. 중점 협업과제에는 인력(정원) 및 예산(특별교부세)을 우선 지원한다.
 - 협업이음 과제는 협업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과제로 51개 기관에서 309개 과제를 제출했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5건을 선정하였다. 특히 5건의 협업이음 과제에 대해서는 3월 30일(수)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업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협업 상대방이 정해진 범정부 중점 협업과제 5건은 ①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 생산, ②교통약자를 위한 휠내비길 개발·운영, ③코로나19 대응 거점(허브) 시스템 구축, ④스마트 보안카메라(CCTV)를 연계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⑤소비자24 제품 인증정보 개선 등이다.

 -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중앙회와 협업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 생산」을 추진한다.
 - 생산된 바이오차는 농가에 토양개량제, 고형연료, 축사깔짚 등으로 공급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
 - 제주도를 방문하는 교통약자(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등)의 관광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제주관광공사, 장애인 관련 단체, 에스케이(SK)텔레콤, 카카오와 협업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휠내비길」을 개발·운영한다.
 - ‘휠내비길’은 교통약자용 길 안내 서비스로, 우선 30개 관광지를 대상으로 시각 장애인용 음성 기반 길 안내 서비스, 청각 장애인용 관광지내 수어 서비스, 실내 장애물 정보를 탑재한 실내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한다.
- 한편, 사업을 함께 추진할 협업 상대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협업이음 과제는 3월 30일(수)에 「2022년 상반기 협업이음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업 상대방을 찾는다.
- 협업이음 과제 5건은 ①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②독거노인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지원, ③의료 취약계층 병·의원 이동편의 지원, ④유휴 국유토지 나무심기, ⑤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산 등이다.

 -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어구, 부표) 재활용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상대방을 찾는다.
 - 해양폐기물 분리배출·회수·염분 제거 등 전처리-최종 제품(휴대폰 부품, 신발, 마우스 등) 생산으로 이어지는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공공기관, 어민단체 등에 협업을 요청할 예정이다.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사소한 생활불편사항(전기제품 부속품 교체, 수도시설 수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는 민간단체를 찾는다.
 - 「독거노인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지원」은 민간단체의 노인 맞춤형돌봄 생활지원사가 세종시가 운영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독거노인 생활불편사항을 신고·접수하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출동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안내

-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하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은 사업에 따라 ‘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 118개 자치단체의 518개 사업을 선정해 올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상담, 농업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21년 주요 참여 사례

- 박○○씨는 43년간 선박 제조업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는 퇴직 후 기술을 활용할 일자리를 찾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내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 씨는 참여 중 지역 내 취약계층 1,000여 가구에 대해 배관 세척 및 설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 김○○씨는 27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지점장으로 퇴직 후, 금융 및 인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업무를 4년간 수행하였다. 자기 능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던 김 씨는 고용노동부와 시에서 공동 시행 중인 「기업멘토단 운영 사업」에 참여했다. 김 씨는 이 사업을 통해 다른 전문경력 퇴직자들과 함께 지역 내 중소기업에 경영·재무·인사·회계·홍보 등 종합적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특히 김 씨는 강사의 능력을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개선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업무시간 외에도 열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 멘티 기업의 극찬을 듣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업멘토단 운영 사업]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자기 경력이나 자격증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업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장년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senior)'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서 확인하여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어업·어촌, 여성어업인과 함께

- 해양수산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에서 여성어업인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구손질, 생산물 가공·유통부터 공동체 돌봄,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어촌유지 활동까지 여성어업인이 참여하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부수적인 부분이 많아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여성어업인’을 비전으로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우선, 어촌, 도시, 해외 등 출신과 정책 수요가 다양한 여성어업인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 고용, 노동·법률 등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관심단계에서는 정보제공, 초급 어업교육, 체험 등을, 준비·실행 단계에서는 사업자금, 심화교육 등을, 정착단계에서는 정착자금 및 주거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 출산 및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작고, 가볍고, 자동화된 장비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노동강도를 낮춘다. 또한, 올해부터 50세에서 69세인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전체 여성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어업인 전용 출산가족 힐링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출산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촌생활돌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학원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도우미 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 그 밖에도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장기·전문 교육과정인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실시, 전담 인력 확충 등 여성어업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5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4월 중 수립하여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윤성원 |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 고용 형태의 다변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 보장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본소득, 음의소득세(NIT)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참여소득 역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모델 중 하나로서, 소득보장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기대되는 제도이다.

○ 들어가며

최근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안심소득)를 비롯하여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의 대체, 고용 형태의 다변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 사회변동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 등은 기존 사회보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도입 과정에서 고려할 문제점이 많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대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여기서는 기본소득과 음의소득세 등에 대한 현실적 대안 중 하나로 ‘사회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을 검토하고자 한다.

○ 사회참여소득의 정의와 관련 논의

(1) 사회참여소득의 정의와 기본소득과의 차이

‘사회참여소득’(이하 참여소득)은 1996년 경제학자인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에 의해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치적으로 보다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다. 참여 소득은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여기에서 참여는 임금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더 넓은 개념인 ‘사회공헌’을 의미한다.

사회활동은 노인이나 가족 돌보기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 직업 훈련 참여나 교육, 자격 공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소득에서 말하는 참여는 일반적인 임금노동보다 훨씬 넓은 범위인 만큼, 근로소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참여소득의 목적은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돌봄 노동, 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인 임금노동 관계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한다.

참여소득은 유사한 제도로 여겨지는 기본소득과도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조건성’이다.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복지급여가 불필요한 부유층에게, 혹은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과 무관하게 소득을 지급하면, 노동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참여소득은 사회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해야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참여소득은 돌봄노동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다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며 부가적인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2) 사회참여소득에 대한 비판

물론 참여소득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참여소득은 노동의무를 부과한다는 점, ‘사회참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과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참여소득과 같은 사업이 노동시장 정책 측면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Direct Job Creation)으로 분류될 수 있어, 이러한 종류의 사업이 직업 훈련이나 고용알선 사업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노동의무 부과에 대한 비판은 결국 참여소득도 현재의 복지제도처럼 노동의무를 부과하여, 노동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잔여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참여’ 혹은 ‘사회적 가치 발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어떤 일에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행정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도 이러한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사회참여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판정하는 것 자체가 모호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참여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행정비용 문제는 시민들 간의 참여를 통한 상호 인정 및 평가를 거쳐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이 지나치게 직접 일자리 창출 쪽에 편중되어 있고, 직접 일자리 사업은 단기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있을 뿐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관련 연구들은 참여소득과 같이 직접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형식의 사업보다는 고용알선이나 직업훈련 등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사회참여소득 개념 적용사례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금

2007년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에서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해 정부가 공급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을 지원한다.

(2) 사회적 일자리 정책

사회적 일자리는 노인과 중, 장년층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 봉사에 가까운 공익형 일자리와 공공부문에서 관리하지만, 근로로 분류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민간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형 일자리로 나뉜다. 이들 중 순수한 사회적 일자리에 가까운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산불 관리, 방역 보조, 교육, 학습지도, 지역 문화해설 등이 있다.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총 80만 개의 노인 일자리 중 공익활동 일자리가 59만 개에 달하며, 예산도 전체 1조 3천억 원 중 8,921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서울시가 50세 이상 중장년 층을 대상으로 ‘보람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도 네덜란드는 어린이 부모 돌봄부터 자원봉사까지 포괄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으로 인식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표 1] 노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급여 수준

구분	활동비(월)	부대경비(연)	참여기간	합계(연)
공공형(공익활동)	270 천원	180 천원	평균 11개월	3,150 천원
사회 서비스형	594 천원	532 천원	10개월	7,930 천원

민간형	시장형	2,670 천원	연중	2,670 천원
	취업 알선형	-	지차제 보조: 150 천원 지차제 보조: 사업비 지원	연중 150 천원

* 주: 사업별 국고 보조율은 50%, 서울은 30%,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민간일자리 부대경비는 사업비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3) 돌봄수당(양육수당, 장기요양 가족 요양비)

돌봄수당은 가족(영유아 혹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정부가 수당의 형태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돌봄수당은 크게 양육수당과 장기요양 가족 요양제도로 나뉜다. 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아동 중에서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등록하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수당은 12개월 미만의 경우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36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10만 원이며, 농어촌양육수당은 수당액이 조금 더 많다.

장기요양 가족 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경우 가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그 외 사유로 시설이 아닌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 앞으로의 발전 방향

(1) 노인 인력 활용과 소득보장

한국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다.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 수준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 세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령 인구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소득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참여소득과 같은 제도가 노인 인력 활용과 노후 소득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한 고령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하며 공동체에 이바지하고, 동료 시민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참여소득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연간 약 5,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보람일자리 사업이라는 사회참여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 참여자를 분석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보람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한 중, 장년, 노년층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보건 의료비 지출 절감, 경제 상황 개선, 사회참여 증대, 가족관계개선, 행복감 상승, 삶의 보람 및 성취감 증진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참여 활동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회참여와 인생 재설계를 모색하는 사례도 많았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사업의 규모는 작다. 따라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2) 노동 개념의 확장과 가치 있는 일의 보상

참여소득 제도는 노동과 일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 개념을 재정의하고 가치 있는 일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 내에서의 돌봄노동, 가사노동과 같이 보이지 않는 노동(invisible work), 사회적 가치는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노동(unpaid work)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 가사 노동, 가족 돌봄 등 현재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보상이되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나가며

활발하게 진행되는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쟁 속에서, 참여소득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그 개념이 적용된 사례도 있으며, 중, 장년,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소득보장과 사회적 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상이 적절히 지급된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급진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도해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_ 윤성원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알기쉬운정책용어

딱 풀 이 딱 딱 한 정 책 용 어 풀 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체계 수립 및 정책실행 본격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명시
- ☑ 온실가스 감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등 포함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됐죠!
시행령 안에 담긴 세부계획을 알려드릴게요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체계’ 수립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0)’를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20년, 지자체는 10년 단위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사회각계각층 의견을 모으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구성합니다



**인간
평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 ✓ 정부부처 장관 및 사회각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
- ✓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심의·의결, 추진현황 점검

알기쉬운정책용어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대응’ 대표정책 5가지

주요 사업·계획 등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기후변화영향평가
취약지 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후위기적응 대책
피해 지역·계층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2.4조원 규모)도 조성했어요

2050 탄소중립 실현

비전·이행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NDC 40% 명시 -중앙·지방정부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기후위기적응 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취약지 특별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립

탄소중립 실천 ‘바로 지금, 나부터!’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이행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고
원활히 실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하고 혜택 받는 법!